

제 10 장 금융서비스

제 10.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나.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8장(투자) 및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8.10조(투자와 환경), 제8.11조(수용 및 보상), 제8.12조(송금), 제8.14조(혜택의 부인), 제8.15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및 제9.10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8.11조(수용 및 보상), 제8.12조(송금) 및 제8.14조(혜택의 부인)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다. 제9.11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0.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다음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국내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 10.5 조제 1 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4.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도록 요구되는 대우란, 지역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10.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거나 지역 정부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¹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0.5 조 국경 간 무역²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0-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

¹ 이 문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²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정보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 공급자가 공급해 온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공급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공개로부터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 를 정의할 수 있다.

3.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6 조 신금융서비스³

한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0.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0.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은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제 10.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⁴

³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인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가 자국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당사국 영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10.9 조 비합치 조치

1.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다음이 유지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정부
 -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지역정부⁵, 또는
 - 3) 당사국의 지방정부⁶
 - 나.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및 제10.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⁷
2.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8.3조(내국민 대우), 제8.4조(최혜국 대우), 제9.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9.3조(최혜국 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에 규정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

⁵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⁶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⁷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우에 맞게, 제10.2조 또는 제10.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 10.10 조 예외

1.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2장(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3장(전자상거래), 제14장(정부조달)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은 당사국이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체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⁸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8장(투자),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통신), 제13장(전자상거래) 또는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은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8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8.8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8.12조(송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8.12조(송금) 및 제9.11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기관 또는 공급자의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자국의 국내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⁸ 양 당사국은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투자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5. 양 당사국은 자국 시장에서 건전성 요건에 합치되게 신금융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제 10.6 조가 국경 간 금융서비스무역, 또는 당사국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공급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을 모든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 10.11 조 투 명 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19.1조(공표)를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4. 각 당사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리고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 대상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이해관계인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한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0.12 조 자율규제기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0.2조 및 제10.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0.1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 또는 당사국에 의하여 위임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실체가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4 조 인정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은
 - 가. 일방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0.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0-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0.16 조 금융서비스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0-다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10.19조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달리 결정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0.17 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그리고 이러한 협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어떠한 요청에 대하여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0-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금융규제당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된 자국의 관련법 또는 양 당사국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약정 요건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요구하거나,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특정 규제, 감독, 행정 또는 이행 사안에 방해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0.18 조 분쟁해결

1. 제21장(분쟁해결)은,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1.7조(패널 구성)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1.7조(패널 구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 3 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 가. 금융기관의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 나. 패널의 의장 이외에 각 패널위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21.7 조(패널 구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제21.11조(불이행-혜택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조치가

-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또는
- 다.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10.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8.18조(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청구) 또는 제8.19조(당사국 투자자의 기업을 대신한 청구)에 따른 청구를 제8장제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고 분쟁 당사국이 제10.10조에 따른 예외를 원용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을 위하여 그 사안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회부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서를 접수할 때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10.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그 결정의 사본을 중재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전달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21.6조(패널의 설치)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0.18조에 따라 구성되며 그 최종 보고서를 위원회와 중재판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60일 기간 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될 수 있다.

제 10.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금융서비스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

그러나 이는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그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 가. 직접보험 (공동보험을 포함한다)
 - 1) 생명보험, 또는
 - 2) 손해보험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 다. 중개 및 대리 와 같은 보험 중개
- 라.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한다)

-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사. 금융리스
- 아.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자. 보증 및 약정
-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1)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2) 외환
 -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 4) 스왑 및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5) 양도성 증권, 또는
 -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타. 자금중개업
 -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그리고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8.45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 8.45 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이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⁹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하거나, 투자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한쪽 당사국의 시민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은 그가 시민인 당사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 또는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금융기관은, 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 15 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⁹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투자의 설치를 인가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한 때와 같이, 투자자가 앞서 언급된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절차들을 취했을 때에만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부속서 10-가 국경 간 무역

캐나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기술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기술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2. 제 1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캐나다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캐나다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기술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그리고 신용 조회 및 분석

4. 제 3 항은 외국은행과 그 계열사중 한곳도, 1991 년 「은행법」 c. 46 의 대상이 되는 경우, 캐나다에 금융 기관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5.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0.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및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공급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¹⁰, 위험평가¹¹, 처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6. 제 5 항은 어느 실체가 그 자체로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한국에서 위험 보험을 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¹⁰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¹¹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7. 한국의 경우, 제10.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가. 금융 정보¹²의 제공 및 이전,
- 나.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다. 중개를 제외한, 제10.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편드운용,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한국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¹² 제7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0-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캐나다

1. 제2항을 조건으로, 캐나다는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
- 2) 신탁 서비스, 그러나 신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의 신탁 보유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서비스

2. 이 약속은 제10.1조 및 제10.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이 약속은 지역정부에서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그러한 조치의 연장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그러한 조치의 개정이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이 약속과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캐나다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또는 그 기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이 약속의 목적상, 캐나다에서 집합투자기구란 관련 증권법 및 규정에 따라 규제되거나 등록된 투자펀드 또는 펀드 운용 기업을 말한다.

한국

6. 한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신탁회사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보관 서비스, 신탁 서비스 및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약속은 제 10.1조 및 제10.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7. 제1항의 목적상,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서는,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의 공급은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한국이 일단 한국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8. 제1항의 목적상, 한국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9조제18항제6호까지에 정의된 집합투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 2 절 감독 협력

9.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 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각 규제당국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당국에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양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규제당국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 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3 절 정보의 이전

10.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은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개인 정보,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기밀성 보호를 위한 것, 또는

나. 건전성 고려¹³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을 그러한 정보의 수신인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것

¹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요건은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가 이 절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호에 따른 고려사항은 소비자 민감 정보의 보호 및 그 민감 정보의 무단 재사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이 절은 그러한 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금융 기관의 기록에 접근하고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일정 정부 기관

11. 양 당사국은 다음 기관이 현재 구성된 대로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투자공사. 양 당사국은 또한 우정사업 본부가 현재 정부기관이며, 한국의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을 인정한다.

부속서 10-다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재정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